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8일

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석 광

나. 제안이유

- 상수도 요금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,
- 안정적 재원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함
-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정비

다. 주요내용

-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.5% 총 12.5% 인상(안 별표 2, 별표 4)
 -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(원/m³당)
- “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.” 는 조항 삭제(안 제2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, 「수도법」 , 「지방공기업법」 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수도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2016. 4. 6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
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원가대비 낮게 책정된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관련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